

연구논문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장 병 윤 *

〈 목 차 〉

- I. 서론
- II. 콘텐츠와 지적재산권의 개요
- III. 분쟁요인과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 IV.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 V. 결론

* 경영학박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주)에프플래닛 대표이사

I. 서론

21세기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용자 편의가 증대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향상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 영역은 가상세계인 사이버공간에까지 확대되었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대두는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거래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거래방식은 사업가들에게 적은 거래비용으로 영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확대를 촉발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확산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전자상거래의 도입은 향후 새로운 산업형태로서 경제·사회생활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므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비대면적, 비서면적, 무형의 상품, 국경을 초월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거래수단이나 거래관행 그리고 거래규범 등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의사전달매체를 이용한 거래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콘텐츠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분쟁유형으로는 미국의 냅스터 사건, 국내의 소리바다 사건과 같은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재산권 침해, 인터넷 사기, 내부자 정보남용, 해킹, 전자우편의 잘못된 남용,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다. 전자거래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법률적 사항들이 인터넷기술의 발전속도에 따라 가기 쉽지 않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암호기반의 신원확인 등 인증서비스 기술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는 한, 네트워크상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와 분쟁 사례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며 사건의 분쟁 또한 다양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에 대하여 전자거래 되는 문제점과 지적재산권 침해의 사례를 연구하며, 분쟁에 대한 에너지 낭비를 피하고자 지적재산권 보호의 대상과 보호방안에 관하여 연구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외의 각종 도서, 연구논문, 저널, 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을 인용,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구성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콘텐츠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적 개요를 논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과 범위를 연구하고자 인터넷에서의 저작물과 보호대상을 연구한다. 제3장에서는 분쟁요인과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를 인터넷상의 콘텐츠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연구 분석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의 책임에 관하여 논거 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 분쟁해결 방법을 연구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II. 콘텐츠와 지적재산권의 개요

1. 콘텐츠와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를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게 뒷받침 해주는 것이 콘텐츠인데 콘텐츠란 본래 인터넷상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내용을 가리키는 IT 전문용어 였으나 차츰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그 개념이 오프라인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제작기술과 프로세스에 따라, 이용형태와 매체에 따라, 그리고 유·무선통신망 유통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는 제작기술이나 프로세스 상에 디지털기술이 가미된 콘텐츠 모두를 지칭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르면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디지털콘텐츠산업 현황 및 전망 2002”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크게 영상·음악·게임·출판·정보 등 다섯개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의 디지털콘텐츠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가리킨다.

이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콘텐츠의 대부분은 이른바 영상·음악·게임·출판 등의 디지털문화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다.¹⁾ 이러한 것들은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에 의해 야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상거래란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행위의 전 과정이 전자적 수단과 기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집, 주문, 접수, 대금결제, 상품 발송 등 일련의 상거래 흐름이 기존의 서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eBusiness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결합시켜 기업의 핵심업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eBusiness라 한다. eBusiness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립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오게 하며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면서 고객 및 기업간의 관계를 혁신시키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²⁾

OECD에서는 “문자, 소리, 시각 이미지를 포함하여 디지털화된 정보의 전송, 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상업적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정의하기도 한다.³⁾

우리나라에서 전자거래의 확대와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를 특별법인 전자거래기본법(전문개정 2002.1.19. 법률 제6614호)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방문판매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으로 제정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

1) 한국전산원, 2002 국가정보화백서, 2002, p330.

2) 장병윤,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분쟁사례 연구,” 중재학회 제11권, 2001, p249.

3) 윤광운·장두채·김철호,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1999, p61.

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2002.3.30. 법률 제6687호)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거래, 전자상거래의 분쟁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주로 메시지 가로채기, 문서의 유효성 부정, 개인정보의 불법적 수집, 해킹과 고의적 바이러스 침입 등이었는데 최근 미국의 냅스터 사건, 국내의 소리바다 사건과 같은 peer to peer방식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네트워크상에서 자주 발생되므로 이러한 침해를 막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러한 분쟁요인들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기여하도록 전자상거래와 콘텐츠의 개념 및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가 네트워크에서 peer to peer로 전자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최근의 경향은 무료 배포가 많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승낙 또는 허가가 없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므로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쟁을 피하려고 기술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반대로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기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와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관련 법적, 제도가 따라 주어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한 예로 중재에 관하여 2002년 1월 26일 중재법을 일부개정(법률 제6626호)하여 외국중재판정(중재법 제39조)을 수용하도록 국제적 조화를 추구하였고,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거래기본법(전문개정 2002.1.19. 법률 제6614호)에서는 전자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전자문서, 개인정보보호,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영

업비밀보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여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법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2001.3.28.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법률 제6439호)하여 2001.12.31. 일부개정(법률 제6585호)을 거쳐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의 업무가 전자상거래로 바뀌었고 무역관련 수출입 서비스가 한국무역정보통신의 EC코리아, 무역협회의 EC21, 기업에 의한 다수의 전자쇼핑 전문몰 등이 탄생하여 가상공간에서 전자상거래가 점진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자거래진흥원 등이 만들어져 법과 제도적 측면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7년에 인터넷뱅킹, 인터넷트레이딩이 시작되어 전자지불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디지털경제에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요소 중 하나인 전자지불, 전자현금의 흐름은 보안, 인증 문제를 낳고 있는데 기업은 이러한 지불, 인증 문제를 기술적으로 꾸준히 해결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법, 제도적인 면을 시대와 기술의 흐름에 맞게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의 전자상거래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지적재산권의 의의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측면(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은 2000년까지 WTO 가입국들이 자국의 지식재산권 법규를 개정·강화할 것을 협약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예고하고 있다.⁴⁾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창작물

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지적소유권 기구(WIPO)설립조약 제2조 2항은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의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의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사람이 두뇌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낸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⁵⁾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란 <그림 1> 지적재산권 분류체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종전에는 “공법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고 하여 산업재산권으로 개칭을 한 것이다.⁶⁾ 또 저작권을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저작자의 권리가 3종류로 크게 구분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칩 배치설계 등의 신지적재산권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조약은 기존 규정의 해석이나 권고, 가이드라인, 기타 모델 규정으로는 더 이상 신기술의 발전에 대처하지 못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법으로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와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가 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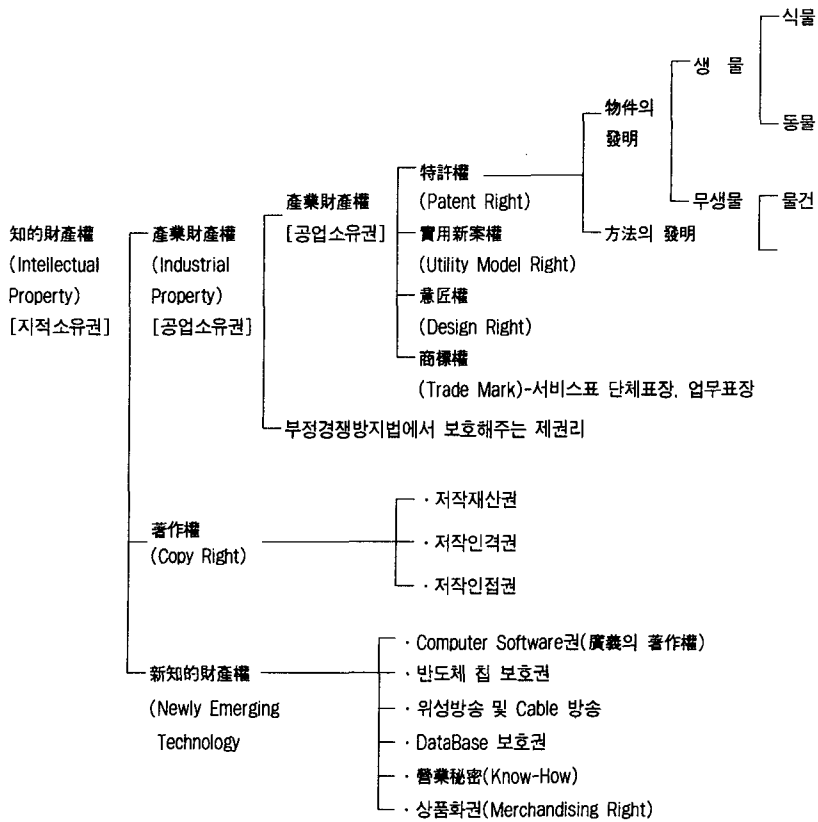
4) Rivette, K. G. and D. Kline, Rembrants in the Attic,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0.

5)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강의, 홍문사, 1997, p41.

6) 김문환외 6인, 지적재산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p5.

란하게 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기술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대응은 신기술에 의한 저작권 침해상황의 파악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작권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림 1> 지적재산권 분류체계



3. 인터넷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대상과 범위

인터넷이 급속히 대중화됨으로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수요의 요구와 공급이 급증하여 바야흐로 초고속 정보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은 콘텐츠의 수요, 공급을 증가시키고 이용형태와 기술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분쟁 또한 다양하다. 그러므로 인터넷사용이 급팽창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텐츠가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와는 다르게 인터넷상에서 새로이 보호해야 할 저작물과 보호대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출판권에 관한 기존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판물의 디지털화를 들 수 있다. 특정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동일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상에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상에 그 저작물을 올리려면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상에서의 공중전송권을 들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사본 또는 음반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 즉 배포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물의 전송 행위가 배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게 2000.1.12. 저작권법 개정에서 전송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송신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호대상이 바로 공중전송권이다. 저작권법(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34호) 제18조의 2에서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전송권을 규정하고 있다.

7) 장병윤,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건국대학교, 2003, pp63-65.

셋째,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를 들 수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은 정보와 자료의 제작, 배포, 이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는 엄청난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 주지만,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폐해를 수반한다. 미국의 경우 컴퓨터 메모리인 램에 의해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복제라고 판시한 1994년 MAI Systems Corp vs. Peak Computer, Inc 사건의 판례는 복제의 범위와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판례라 할 수 있다. 국내는 저작권법 제16조에서 복제권을 명시하고 있고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음반의 복제 배포권은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처럼 유사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지만 2002년 7월 소리바다의 무단 배포를 금지한 결정은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의 문제점 및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우를 잘 보여준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데이터베이스를 들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초고속통신망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전자정보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제작되어 국내·외에서 유통된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물에 관한 보호가 요청된다.

다섯째,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디지털 저작권침해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에 규정되어 있지만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되는 저작물의 보호가 요청된다.

여섯째,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관련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는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의 연관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순전히 인터넷관리의 기술

적 편리성을 위하여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문자체계로 고안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 법적 보호를 받는 등록 상표와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경우 사용되는 도메인 네임과 관련하여 상표권이나 상호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 갖는 지적재산권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표등록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메인 네임 등록체계 역시 상호 연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상표등록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각국의 정보에서 권한을 갖는 것이고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등록은 인터넷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없는 사이버 세계에 고유한 것으로 선출원 등록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는 2002년 10월 24일 Sony회사의 사건(서울 민사합의 12부, 도메인이름 이전결정 취소 및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도메인을 선점했던 개인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의 도메인 이전결정에 불복하여 소니사를 상대로 낸 소송)판결에서 원고가 도메인 이름을 비싼값에 매도 하려고 소니측에 제안한 점과 일반인들도 이 사건의 도메인 이름을 소니사와 관련된 홈페이지 일 것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도메인 등록행위로 인해 소니사의 상호 식별력이 손상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혀 유명상표권자인 소니사의 손을 들어주어 도메인 네임 선점에 의한 상표권 사건에 일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보호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지적재산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

호기술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보보호는 의도적으로 또는 우연히 허가받지 않은 형태로 컴퓨터 및 통신망에 접속하여 정보를 누출·전송·수정·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함으로서, 유·무선 통신, 시스템, 생체 등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생성·유통·저장·소비·인식·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은 다양하다. 정보보호기술의 표준화를 위해서 인터넷 보안기술포럼, 전자지불포럼, 액티브 네트워크포럼 등 분야별 표준화 단체가 활발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추세나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의 다양성을 고려시 기존의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보호 방법으로서는 이를 해결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물 보호에 법적, 기술적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기술의 발전 추이에 맞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정하거나 제정이 필요하다.

Ⅲ. 분쟁요인과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1. 문제점과 분쟁요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콘텐츠의 다양화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이와 함께 많은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단순하게는 콘텐츠 무료배포, 프로그램소스 공개에서부터 보안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즉, 공신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문제점이다. 이 문제점이 바로 분쟁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저작권자에게 중요시 되는 것은 보안과 지적재

산권 보호이다. 현재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콘텐츠 거래에서, 개인간 거래의 불법 무료배포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운영자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말미암아 분쟁이 발생한다. 즉 분쟁을 방지 하기 위한 시스템 통제와 지적재산권 보호는 보안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에 관한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전자상거래 보안시스템에도 암호화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보안프로토콜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장병윤(2001)이 연구한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보면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최근 네트워크상에서 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지적재산권침해를 방지 하고자 저작권자의 파일에 디지털 워터마킹과 디지털저작권관리(DRM)기술을 적용하여 기술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추세가 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정보보호, 정보보안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기업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기술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 하고자 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표 1> 보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해결방안
UNIX 및 TCP/IP 프로토콜의 source 공개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함
인터넷 서비스 업체 및 사용망 증가로 인한 손쉬운 접속	VAN(value added network)을 이용하여 특정 소수에게만 접근허용
해킹방법에 관한 정보접근이 용이함	처벌강화, 관련법 제정
각종 응용프로그램들에 존재하는 버그	계속적인 연구, 개발로 성능향상
시스템 및 망 관리자의 보안 인식 능력 부족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
Encryption 기법의 불완전성	생체측정시스템을 암호화 과정에 도입하여 개선

2.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인터넷 온라인으로 인한 P2P(peer to peer)방식이 대두됨에 따라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복제 및 배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복제를 하는 경우에도 누가 하였는지 정보의 추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소프트웨어 등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상으로 배포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 간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복제행위를 하고 있어 네트워크상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컴퓨터프로그램과 네트워크에서 일어난 기존의 사례 등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전자거래진흥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분석한다.⁸⁾

1) 통신망 운영자와 전자게시판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37210판결

[사건개요]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은 한국피씨통신 주식회사가 운영중인 하이텔(HITEL)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전용게시판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은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소외 회사)와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중 각 지부별 노동조합 간부가 철야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수배되어 일부는 검거되고 일부는 명동성당 및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위 전용게시판에는 대통령, 정부기관, 소외회사, 소외회사의 경영진과 직원 등이 마치 원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양 그들을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매도하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된 게시물과 원고 노동조합원을 선동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다수 게재하였다가 삭제되었다. 원고가 게재하였다가 삭제된 게시물도 농성중인 노동조합 간부들을 옹호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을 선동하거나 또는 소외 회사 등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이었다. 이 전용게시판은 원고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한국피씨통신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일반 하이텔 이용자도 자유롭게 열람하고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개된 게시판이며,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에게 위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판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의 판례), 전자거래진흥원(www.ecmc.or.kr의 주요사례)의 홈페이지 공개자료 참조.

계속 게재되었고 따라서 전용게시판 개설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후 피고는 1995.6.6. 이 사건 전용게시판의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였다가 같은 달 6월16일 폐쇄게시판으로 전환하여 재개하였다. 위 전용게시판이 폐쇄된 후 원고는 일반게시판인 플라자(PLAZA)에 선동적인 노동조합의 투쟁명령이나 피고의 삭제행위를 비난하는 내용 또는 소외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되었다.

[판결요지]

[1]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게시물의 내용이 약관에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시물의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게시물이 게재될 당시의 상황, 게재자의 지위,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와 목적, 게시물의 표현 방법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대체로 타인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며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과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많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컴퓨터통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시킨 컴퓨터통신 사업자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 사건은 통신망에 게재된 게시물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내용인 경우에, 통신망사업자가 당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사건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등과 같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통신망사업자와 그 이용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사용약관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서 추가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점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통신망사업자는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명예훼손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까지 있는지 여부이다. 즉, 통신망사업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러한 명예훼손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당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이는 통신망사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의 하나가 된다.

2)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램 무단배포

서울지방법원 1997.8.8. 선고 96가합75067 판결

[사건개요]

보광미디어가 CD블리츠로 부터 프로그램의 복제·판매의 권한을 허락 받아서 국내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던 중에 동 프로그램의 무단복제물이 나우콤의 통신망에 게재되어 다수의 통신망이용자들이 무단복제물을 복제하게 되자, 보광미디어는 나우콤을 상대로 해서 저작권침해로 인한 통신망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요지]

보광미디어가 문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니고 오직 비배타적 이용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광미디어의 권리를 침해한 바는 없고 따라서 통신망사업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도 다룰 수 없다고 판시됨.

이 사건은 인터넷 또는 PC통신상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인터넷서비

스사업자 또는 컴퓨터통신망사업자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이다. 인터넷 또는 PC통신상의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저작권침해행위를 직접 한 자 이외에 당해 침해행위가 발생한 서버컴퓨터를 제공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또는 통신망사업자도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로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많은 분쟁사례가 있고 이미 상당수의 판례도 있는데, 요컨대,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경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판례가 없어서 법원의 입장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물이 나우콤의 통신망에 게재되어 다수의 통신망이용자들이 무단 복제물을 복제하게 되자 나우콤이라고 하는 통신망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보광미디어가 문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니고 오직 비배타적 이용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광미디어의 권리를 침해한 바는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통신망사업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에 대한 판단은 회피하게 되었다.

3)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저작권, 상표권 침해의 책임

Sega Enterprise Ltd. v. Maphia
 (DC NCalif) 30 USPQ2d 1921 3/28/1994
 1994년 3월 28일 선고. No. C 93-4262 CW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판결요지](Headnotes)

COPYRIGHTS

(1) 저작권 ; 침해 ... 공정이용 ... 공정이용법리의 요소들(213.1503)
침해의 주장과 소송절차(Infringement pleading and practice) ... 기여침해; 사용자 책임 (217.08)

컴퓨터제품의 보호가능성 ... 침해 (225.07)

원고는 그의 비디오게임이 피고의 전자게시판에 업로드 되었을 때에 그의 게임이 허락 없이 복제되었으며, 그것이 직접적 침해를 구성함을 증명하고, 그 게임의 복제본이 게시판 사용자들에게 피고의 장려, 지시, 관련 지식의 제공으로 다운로드된 경우에는 기여침해가 됨을 증명하였는데, 이 때, 피고가 정확히 언제 게임이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될 경우인지 모르는 경우라도 무방하다. 피고의 이용은, 그 이용이 상업적 목적이고, 저작물의 성격이 공정이용의 범리와는 거리가 멀고, 게임의 전부가 복제되었으며, 전자게시판상에서의 복제의 허락이 시장에 대해 상당 정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므로, 공정이용의 범리는 적용될 수 없다.

TRADEMARKS AND UNFAIR PRACTICES

(2) 침해; 상표간 충돌 ... 사칭통용 (passing off) (335.07)

원고는 그의 비디오게임이 피고의 전자게시판에 복제되었을 때 원고의 "Sega"표장이 화면상에 나타나고, 전자게시판에서 다운로드되어 게임이 계속해서 이용되는 때에도 동 표장이 화면에 나타남을 입증하고, 피고가 그의 파일명으로 "Sega"를 이용한 것을 증명함으로써, Lanham법 상의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에 관한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인정된다.

COPYRIGHTS

(3) 침해의 주장과 소송절차 ... 항변 ... 일반론 (217.0601)

TRADEMARKS AND UNFAIR TRADE PRACTICES

침해: 상표간 혼동 ... 항변 ... 일반론 (335.1001)

원고의 피용인이 상표와 저작권침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신원을 그 자신의 신원으로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신분공개가 있었다면 침해조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 피용인의 신분공개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저작권·상표권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REMEDIES

(4) 비금전적 금지명령 ... 형평법상의 구제 ... 압수; 몰수

일방적인 잠정적 금지명령과 압수명령은, 원고의 저작권이 있는 비디오게임의 허락 없는 해적판을 만드는 온라인 컴퓨터 전자게시판 운영자에게 합당한 처분이다.

사건경위와 판결이유:

Sega Enterprises Ltd. 와 Sega of America Inc.가 MAPHIA와 Chad Scherman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을 이유로 제소하였다. 원고는 예비적 금지명령과 압수명령의 확정을 신청하였다. 신청은 인용되었다.

판사 Wilen의 의견:

본 사안은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101조), 연방 상표권 침해(상표법 1051조), 연방 부정경쟁/ 허위의 출처표시 (동법 1125조 (a)항), 캘리포니아 상호권 침해(캘리포니아 사업 및 직업에 관한법-California Bussiness & Professions Code- 14400조),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법(동법 14210, 17200-17203)위반으로 피고 Chad Scherman과 몇몇 다른 개인적 전자게시판 운영자들, MAPHIA와 다른 출처를 알 수 없는 전

자게시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1993년 12월 9일에 존경하는 Fern M. Smith판사가 주재하는 법원은 일방적인 잠정적 금지명령과 압수명령(Exparte Temporary Restraining Order, Seizure Order, and Order to Show Cause Re)을 결정했고, SEGA상표의 사용을 금하는, 그리고, 원고 저작권의 직접적, 그리고/또는 기여침해에 대해 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Judgement)을 내릴 수 없는가에 관하여 소송 원인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하였다.

1993년 12월 17일 법원의 재심리명령에 응하여, Smith판사 주재로 원고의 예비적 금지명령의 신청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그 심리에서 Smith판사는, 법원의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 금지명령은 유효하다고 했다. 그 이후에 피고 Paolo Rizzi는 개별적으로 예비적 금지명령과 압수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 Scherman과 MAPHIA는 그 반대로 분류되었다. 이상의 서명된 조치를 다시 확정하기 위한 다음 심리가 1994년 2월 25일에 열렸다. 이제 법원은 소장,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들, 당사자의 구두변론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 Scherman과 MAPHIA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비적 금지명령이 부여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 Sega는 비디오게임에 관한 저작권과 "Sega"라고 하는 표장에 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 Maphia 등은 전자 게시판 운영자로서 원고의 비디오게임을 동 전자게시판에 올려서(upload) 동 이용자 즉 고객으로 하여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 비디오게임을 복제 및 이용하도록 하였는바, 미국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 및 상표권의 침해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실제로 저작물 복제행위를 한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복제를 가능하도록 하거나 조장한 전자게시판운영자도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PC통신의 이

용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통신망 속에 음란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또는 복제물이 공급되는 경우에, 그러한 음란물이나 무단 복제물이 PC통신상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방치하거나 묵시적으로 허용한 전자게시판운영자 등의 통신망사업자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통신망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통신망 사업자를 발행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도매상으로 보아야 하는가(publisher or distributor)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망사업자가 통신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편집권 또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 취급이 달라진다고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미국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전자게시판운영자에게 상당한 통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저작권침해의 방조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Playboy Enterprises Inc. v. Frena*<각주: 839 F. Supp. 1552 (M.D.Fla. 1993)> (*Playboy Enterprises Inc. v. Frena* (DC MFla) 29 USPQ2d 1827. 12/9/1993. 1993년 12월 9일, 93-489-Civ-J-20. 미국 플로리다 중부지방법원)사건에서 피고인 전자게시판 운영자가 자신은 원고의 저작물의 복제물이 통신망가입자들에 의해서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연방지방법원이 전자게시판운영자의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저작권침해의 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국내 사례로 KBS방송국의 저작권침해 책임이 다투어진 사례<각주: 대법원 제1부 1996.6.11. 선고 95다 49639 판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주말연속극 대본작가인 최연지가 KBS가 방송한 주말연속극 대본 중 13회분에 대해 윤상일의 법조소설에 나오는 형사사건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 및

표현을 그대로 또는 다소의 변경을 가하여 집필하였고, 이에 윤상일이 최연지 및 KBS, 드라마 제작단을 상대로 하여 저작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다. 원고 윤상일은 최연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KBS 및 드라마 제작단에 대하여는 (i) 사용자책임, (ii) 고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iii) 2차적 저작물인 방영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각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본작가인 최연지의 저작권침해 사실은 인정하여 저작권법 93조 2항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명하였으나, KBS 및 드라마 제작단에 대해서는, (i) 사용자, 피용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없고, (ii) 방송사나 제작진이 저작권침해 방지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여 책임을 지을 수 없으며 (iii)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침해저작물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수 없어 부당이득이 아니라 하여 각각 배척하였다. 이러한 대법원판결은 방송사측에 저작권침해방지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론상 평가하기 곤란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대법원이 공동불법행위자의 주의의무를 지나치게 완화시켜서 공동불법행위의 인정에 인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정상조는 평석을 하였다.

IV.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1.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지식 정보화시대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정보화발전에 중요

한 요소가 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적소유권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보통사람들은 특히, 저작권 그리고 상표에 대해 아주 일반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관련된 법적, 경제적, 그리고 무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더구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지적재산권을 일종의 독점적인 권리로 악용한다면 더 많은 지적재산권 침해사례와 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통합되어 고속의 컴퓨터와 통신망은 저작자, 사용자 뿐만 아니라 인쇄업자, 출판업자, 전시업자, 그리고 배포업자가 될 수도 있게 하였다. 이는 거래 당사자들 모두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사용자들은 지적재산권법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결보기에 해롭지 않을 것 같은 컴퓨터 통신망에서의 거래가 어떻게 해서 지적소유권에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한다.

일반인들도 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사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보시장을 작동하게 하며 그 정보의 거래의 활성화가 곧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상에서 콘텐츠 거래의 발전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야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인터넷 사이버상에서는 복제와 배포가 너무나 쉽고 빠르다. 단지 한번의 불법 복제가 저작물의 합법적인 복제물의 시장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일 개인들이 결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은 사적 복제를 한다면, 이윤을 기대하는 프로그램의 저작자나 판매용 녹음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클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권보호방안으로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장치에 앞서 우선 사용자의 의식이 중요하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지적재산권보호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바탕에서 저작권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를 기술적, 법률적, 비즈니스적 접근을 병행하여 보호되어야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장병운(2003)의 연구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생각 할 수 있다. 첫째는 저작권 보호기술이고, 둘째는 법률적 기반 구축이다. 이 것들은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첫번째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은 인터넷의 활성화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저작권보호기술 중 저작권 관리의 개념 및 디지털 저작권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술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디지털 콘텐츠의 유일 식별 체계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대표적인 보호기술이다.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 및 관리내용을 해당 콘텐츠에 표현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사용 금지 및 거래 조건의 다양성을 띠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과는 달리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환경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는 아날로그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흥정과 거래 조건들을 디지털 시장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세부 거래조건은 물론 부분적인 정보 콘텐츠까지도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전 유통과정에서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저작권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기를 정의하는, 즉 콘텐

츠의 사용 규칙을 정의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 정의대로 보호되도록 제어하는 일련의 기술들이 필요하다. 또한 콘텐츠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측정하여 그 정보를 근거로 과금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식별자 체계로 DOI가 제공되고 있으며 저작권 규칙 기술언어로 XrML이 제정되어 MPEC7, MPEC21 등과 함께 최종 표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사용규칙의 정의가 표준화된다면 사용규칙을 작성하는 도구 및 콘텐츠 응용 시스템의 상호 호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틀을 개발하려는 AAP(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의 노력으로부터 발전하였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과학기술 관련 학술잡지, 출판사, 전자저널형태로 유통시키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의 식별체계로서 ISBN이나 ISSN 등이 기존의 식별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며, 콘텐츠의 고유한 식별시스템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1997년 미국 출판협회는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고유한 식별체계의 개발을 모색하던 중 URN(Uniform Resource Names)체계를 따르는 고유식별 시스템으로서 DOI를 개발하게 되었다.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하려는 객체가 무엇인지를 혼동함이 없이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DOI는 URN체계의 한 사례로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고유한 식별기호를 부여하고 이를 URL로 변환하여 인터넷상의 해당 정보의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이다. DOI는 URN 해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 DOI 핸들 시스템에 의해

DOI를 URL로 변환시킴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DOI를 가지고 콘텐츠의 해당위치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OI는 지적 콘텐츠의 모든 형태에 대해 폭넓은 응용성을 갖고 있고 비디오, 파일, 책, 기사 같은 관련 자료의 모든 형태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원문 제공, 지불 문제, 라이선스 같은 정해진 일상적인 트랜잭션들을 처리하는 자동화된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두번째인 법률적 기반 구축에서는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즉 가정내 통신시설 확충, 모바일 통신서비스, 디지털 방송서비스, 정보가전과 홈네트워크 보급 등 확장이 개인생활의 정보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시 법·제도적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현재의 문제점에서 예견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법률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전자상거래의 콘텐츠 확대에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내 법률의 기반 구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는 전자거래기본법을 1999년 2월 8일에 제정하였고 2002년 1월 19일에 전문개정하여 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57호)과 전자서명법(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은 개정을 통하여 2001년 7월 17일과 2002년 4월1일에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2002년 3월 30일에 제정하여 동년 7월 1일에 시행함으로써 전자거래의 기본 틀을 잡았다.

전자거래기본법은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1996년 5월에 제정한 모델법에 기초하여 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기반 조성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기본 틀을 잡은 것이다. 1999년에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암호제품의 사용제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방안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현 행정자치부(구 총무처)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실무협의를 구성하고 전자문서시스템 호환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단위 이상에 e-mail ID 보급 및 전자우편 시행(1998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전자문서제도의 본격 시행(1999년)을 준비하였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국가계약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국가계약관계 법령에 전자입찰이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적 국내기반조성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제도를 개선하였다. 법무부와 정보통신부에서는 전자서명제도 도입 추진을 위하여서 선진국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고 필수적인 사항을 법령에 반영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을 벌여왔으며 2001년 12월 31일 일부개정(법률 제6585호)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2002년 7월 1일에 시행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687호)은 시행 4개월만에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업계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일부 손질한 개정법안을 시행하고자 함이다.

2. 운영자의 책임

인터넷 통신에 있어서 인터넷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책임체계에는 차이가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책임은 그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뉴스그룹이나 타인의 홈페이지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침해물을 올리는 사람인 제공자, 전자우편을 통하여 침해물을 전달하는 사람인 전달자 또는 침해물이 있는 뉴스그룹이나 타인의 홈페이지와 자신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사람인 촉진자로 나누어지고, 이들에 대한 책임기준도 달라진다.⁹⁾

이들 침해자 중에서 촉진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므로 네트워크 운영자와 같이 책임이 경감될 여지가 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직접적으로 저작물, 정보 등의 내용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타인의 내용물이나 서비스 이용자에게 의하여 올려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에 의해 올려진 내용물에 의한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는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의 공간을 제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즉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된다.¹⁰⁾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을 인용한 장병윤(2003)의 연구논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¹⁾

9) Waldenberger, "Zur zivil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für Urheberrechtsverletzungen im Internet", ZUM 1997, S.180-181.

10) 현대호, "인터넷상 저작물 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리와 그 전망," 지식재산 21, 1999. 7, pp28-29 참조.

11) 장병윤, 전제논문, 2003, pp77-80.

1) 미국

미국의 판례와 저작권법은 직접침해책임·기여책임 그리고 대위책임이라는 책임을 각각 달리 다루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자와 관련하여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과 달리 면책하거나 또는 보다 높은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¹²⁾

Lehman보고서는 침해에 대한 책임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미국의 현행법 또는 저작권의 원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고, 저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해서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았다.¹³⁾ 또한 Lehman 보고서는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현재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가입자들에게 저작물을 올려 실을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전자출판자로 행동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

- 12)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 즉 첫째,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에 있는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이를 감사하거나 시사할 수 없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검사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침해물을 항상 가려 낼 수 없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통신과 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저해될 것이다. 넷째, 침해책임에 노출되면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사업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결국 국가정보기반을 실패케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섯째, 법은 가입자들이 행한 행동에 대하여 가입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Lehman A.,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1995).
- 13)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 즉 첫째, 서비스 제공자만이 배포자의 책임을 올지는 것은 아니다. 서점·음식점·소프트웨어 판매상 등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둘째, 이러한 손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종의 비용으로 여겨지게 된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정보기반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만이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다섯째, 침해로 인한 책임이 컴퓨터 전자게시판이 주는 이익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Lehman A.,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1995).

운영자는 다른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단일 규범을 마련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만일 네트워크 운영자가 전화국처럼 단지 전송만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전달자와 같은 지위에 있고 따라서 시스템을 누가 그리고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통제할 수 없다면 면책을 주장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¹⁴⁾

그러나 미국 디지털저작권법안(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H.R.2281): DMCA)은 네트워크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디지털 저작권법안 제512조는 네트워크 운영자의 서비스를 4개의 영역, 즉 단순한 통신(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 일시적 저장(system caching),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information residing on systems or networks at direction of users)과 링크(information location tools)로 나누고 있다. 단순한 통신과 일시적 저장의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한적으로 금전적 배상책임을 허용하고 있다.¹⁵⁾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네트워크 운영자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즉 ① 침해물 내지는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알지 못했거나 주위 상황에 비추어 알 수 없었던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안 경우에 즉시 침해물의 제거 내지는 침해행위를 차단한 경우, ② 네트워크 운영자가 이러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는 때에는 침해행위로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③ 침해행위에 대한 통지

14) Lehman A.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1995

(<http://www.law.vill.edu/chron/articles/nii/nii.html>).

15) DMCA, Sec. 512. (c) INFORMATION RESIDING ON SYSTEMS OR NETWORKS AT DIRECTION OF USERS - (1) IN GENERAL

를 받고 즉시 침해물의 제거 내지는 침해행위를 차단한 경우에 책임이 배제된다. 링크의 경우에는 ① 침해물 또는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는 주위 상황에 비추어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 ②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물 내지는 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③ 침해에 대한 통지를 받고 즉시 침해물의 제거 내지는 침해행위의 차단을 한 경우에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고 있다.¹⁶⁾ 이들 4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침해물과 침해행위의 부작위 및 제거청구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도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기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의 논의를 유추 적용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기여침해와 대위책임에 대하여 독일법계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민사적 책임원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대륙법체계에 따라서 온라인 통신서비스법과 통신서비스주협약의 제정, 이전의 독일의 논의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일반적 과실”에 의하여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행위성에 따라서 작위성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93조에 의한 침해자의 책임을, 단순한 부작위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위험방지의무”라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물론 침해물의 제거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저작권법 제91

16) DMCA, Sec. 512. (d) INFORMATION LOCATION TOOLS

조 1항이 적용된다.¹⁷⁾

3.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 분쟁해결 방법

지적재산권침해란 지적재산권 권리자 이외에 제3자가 권리보호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위법하게 실시하는 행위이며 그 형태에 따라 직접침해 및 간접침해로 구분된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방법 중 하나는 이미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분쟁해결방법으로는 당사자간의 협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또는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중재 및 알선에 의한 협상 등의 방법이 있고 그밖에 통상차원의 해결방법이 있다. 특히 상인이 사이버 공간에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지적소유권과 관련하여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등의 법적문제가 발생하는데¹⁸⁾ 최근에는 이러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프로그램의 결합 내지 부족한 점을 제거하거나 보충함으로써 개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는 소프트웨어의 보호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것 또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법 중 하나이지만, 그러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프로그램 표현에 한정되므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허권에 의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

17) 현대호, 전제서, 1999, p34.

18) 이상정, "전자상거래와 지적소유권, 특집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제33권2호, 경희법학, 경희대학교, 1990. 12., pp54-82.

다.19)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정보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고도의 저작권관리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저작권침해에 대한 보호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프로그램을 미리 등록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방법도 있다.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 분쟁해결 방법을 보면,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고자 중재법(2002.1.26. 법률 제6626호)의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조항(제39조)이 2002년 1월 26일 일부개정되었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는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0년 2월에는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여 2001년 12월에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의 기관이 공인인증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1999년 10월에는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화 역기능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공포 및 시행으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또한 2002년에 정부는 정보화, 지식기반, 디지털 사회의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을 노력하고 있다.20)

인터넷은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가장 빠른 속도로 기술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인터넷만큼 신속하게 활성화된 기술은 지금까지 없었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나 대량의 정보에 매우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 접근을 가능하게 되었다. 즉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정보

19)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의 특허청의 운용지침과 해석등에 의하면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에 의한 특허는 인정되지 않으나 수학적 알고리즘이 다른 요소와 결합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특허성이 인정되고 있다.

20) 한국전산원, 전게서, 2002, pp12-13.

의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²¹⁾ 정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인터넷은 인간의 창의력의 모든 범주와 관련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논의의 주제를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에 관련된 기술을 내포한 전반에 대하여 이에 관한 특허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콘텐츠 등은 특허능력 허용 범위를 놓고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새로운 분야이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분쟁해결에 중요하다.

특허제도의 본질은 발명자가 새로 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사회일반에 조속히 공개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 일정한 범위의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²²⁾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특허의 존속기간)동안 일정한 범위의 기술분야에 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특허권)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에 의한 권리보호는 발명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동의 결실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고, 그러므로서 발명자(창작자)에게 발명에 대한 경제적 동기(incentive)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²³⁾

인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적재산권법 중 저작권은 사상의 표현을 보호하는 반면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idea) 그 자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²⁴⁾ 따라서 창작자는 경제적 동기와

21) Ian C. Ballon, at 1264; Esther H. Lim, "Patent and the Internet," 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ty - Joint Intellectual Property Symposium, COEX, 1998. 4. 29, pp9-44.

22) 김문환외 6인, 전계서, 1996, p65; 김승래, 지적재산권법 원론, 도서출판 달기, 1998, p47;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1998. p178

23) Phillip L. Spector, "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ITAL 1996 International Symposium, 1996. pp149-150.

24) Jeffrey G. Raphelson, supra note 50, at 1204.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저작권제도 보다는 특허권제도에 의한 강력한 보호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특허의 독점배타성은 지식 확산이나 이를 통한 창조의 측면에서는 역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내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특히 특허권) 보호강도에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²⁵⁾

인터넷에서의 특허권보호문제는 인터넷기술과 관련하여 특허요건 및 특허권침해에 관한 상세한 법률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소프트웨어혁명시대에 떠오르고 있는 소프트웨어로서의 콘텐츠 및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특허능력을 비즈니스모델의 방법으로 특허등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방법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비즈니스모델로 하여 특허로 등록하고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인증 등의 기반 조성, 전자거래진흥원과 같은 관련 기관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국가기간망의 안정성 및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인터넷상에서의 콘텐츠 거래, 즉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보호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인터넷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정보보호가 중요시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

25) Jeffrey G. Raphelson, at 1204; 폴 로머, 소프트웨어혁명 - SW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 매일경제, 1999. 4. 15., p9, 지식경영 국제컴퍼런스 시상증서 내용 참조.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법률적 사항들이 인터넷기술의 발전속도에 따라 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즉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침해,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처하기 힘들다. 급속한 인터넷의 확산은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를 창출하고 보다 편리한 경제생활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경우 나타나는 경제상황의 과도기처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발생은 분쟁의 요인이 된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콘텐츠는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암호기반의 신원확인 등 인증 서비스 기술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는 한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며 분쟁유형 또한 다양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전자거래의 출현으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하여 규율할 새로운 법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에서 지난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개정을 거쳐 전자거래 관련 법익의 보호와 전자결제, 과세 및 분쟁해결에 힘쓴 결과 비교적 빠르게 전자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전자서명의 보급과 인증기관의 활동 또한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거래에 관련된 법은 관련 법률간의 중복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범과의 모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나타나고 있으며 날로 발전해 가는 전자거래에 관한 신기술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도 미비점을 나타내고 있어 근래 이러한 법률에 대한 단일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산업발전과 전자상거래라는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무체물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의 급진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빠르게 대체되기 때문에 유체물과는 다른 특징을 지녔다. 고로 그 유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객관적인 지적재산권 가치평가가 곤란하며 여러 제도의 미비점 등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다시 말하면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문제점과 분쟁요인, 침해사례,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에 관하여 분석 파악하고,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과 운영자의 책임,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로 인한 연구결과로서는 첫째,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이 기술발전추이에 상응하도록 제정,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국내 중재법, 지적재산권 관련 입법이 국제입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 수용되도록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국제통상과 외교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과 연관된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를 통일시키고 단일화하여 입법상의 에너지 낭비를 피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사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이는 인터넷 콘텐츠 관련 산업발전을 위하여 고객만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IT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술과 법,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 세계적 추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는 일은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적 기반 없이 전자거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하는 전자거래의 특성상 국제입법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국제사

회로부터 냉대를 받게될 것임은 물론 실무상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제 정비에 있어서는 전자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제도가 오히려 전자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콘텐츠와 전자상거래의 개요를 살펴보면서 인터넷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과 범위를 연구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분쟁요인과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 지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례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는 다양하고 지능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분석 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보호 문제가 기술적 측면에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하여 대표적 유형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이는 인터넷에서 콘텐츠 거래의 시장확대와 지적재산권보호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과 운영자의 책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 분쟁 해결방법을 제시 하였다. 즉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기술발전의 추이에 맞추어 법률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지적재산권보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국외의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부터 조정까지의 케이스를 분석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기업의 비밀과 법률적 제도로 인하여 자세하게 열거 할 수 없는 것이 한계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경제적 가치, 기술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이를 통한 활성화 방법을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본 연구결과의 큰 의의는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문제를 법적,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연구 분석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는 향후 각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실증적 연구가 병행하도록 하는 시사점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적재산권자를 보호 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소모를 피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콘텐츠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국가의 인터넷 콘텐츠산업발전과 기업, 소비자를 위하는 것이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國內文獻

- 김승래, 지적재산권법 원론, 도서출판 달기, 1998.
- 김문환·이기수·황종환·이덕록·윤선희·정상조·권태복, 지적재산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 나승성, 전자상거래법, 청림출판, 2000.
- 배대현, 전자서명·인터넷 법, 세창출판사 2000.
- 송영식·이상정, 지적재산법(신4정판), 세창출판사, 2000.
- · 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1998.
- 윤광운·장두채·김철호,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1999.
- 이상정, "전자상거래와 지적소유권-특집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33권 2호, 경희대학교, 1990.12.
- 장병운,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분쟁사례 연구," 중재학회지, 제11권, 2001.
- ,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건국대학교, 2003.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 한국전산원, 2002 국가정보화백서, 2002.
- 현대호, "인터넷상 저작물 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리와 그 전망," 지식재산21, 1999. 7.
- 현암사 소법전, 2002
- 소비자보호법

저작권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중재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허법

2. 西洋文獻

Ballon, Ian C., at 1264; Esther H. Lim, "Patent and the Internet,"
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ty - Joint Intellectual
Property Symposium, COEX, 1998. 4. 29, pp9-44.

DMCA, U.S.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H.R.2281),
U.S.A.

Lehman A.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1995
(<http://www.law.vill.edu/chron/articles/nii/nii.html>).

Raphelson, Jeffrey G., *supra* note 50, at 1204.

Rivette, K. G. & D. Kline, Rembrants in the Attic,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0.

Spector, Phillip L., "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ITAL 1996 International Symposium, 1996. pp149-150.

Waldenberger, "Zur zivil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für
Urheberrechts-verletzungenim Internet", ZUM, 1997,

S.180-181.

3. 新聞記事 및 其他資料

매일경제신문, 1999. 4. 15.

<http://www.copyright.or.kr/>

<http://www.ecmc.or.kr/>

<http://www.pdmc.or.kr/>

ABSTRACT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ontents upon Internet

Byung-Youn Chang

This is to study intellectual property(IP) protection of contents which is related with transactions upon internet network. Issues of electronic transaction and infringement cases were studied and analyzed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Upon those study, utilization and activation of contents, dispute settlement and method of IP protection were suggested.

To achieve this study purpose, it consists of 5 chapters. In chapter 1 introduction, it's mentioned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In chapter 2, outline of contents and e-Commerce, and subject of IP protection upon internet were studied. In chapter 3, issues and dispute factors of IP were discussed and infringement cases were analyzed. It found out that infringements would be variety and complex due to technology rapidly changes. In chapter 4, IP protection plan and responsibility of webmaster were studied and emphasized to protect IP upon Internet. Also, protection against infringement and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were studied and suggested the method. In this study, the protection plan was

suggested because IP protection of contents in internet would be many cases upon internet technology. It found out that technology was important for business expansion of contents, e-Commerce and IP protection, and to enact a law related with IP. In chapter 5 conclusion, this study was summarized and further research was suggested.

This study results are 1. IP related laws had better enact or revise to meet internet technology changes for IP protection timely, 2. local laws are to change and develop to harmony with international norm and trends, 3. consolidation of IP related laws for unification of IP statement should be incurred to avoid unnecessary energy of legislation and not to create dispute matters. That's also for customer satisfaction.

In conclusion, not to incur ADR and for IP protection of contents, IP related laws would be promptly made or revised, according to technology change trends and for international harmony. That's for internet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and customer satisfaction.

Key Words: Intellectual Property, Contents, Internet, Dispute, e-Commerce, Infringement, IP Protection